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798호
2. 발 의 자 : 장인홍 의원
3. 발의일자 : 2019. 8. 1.
4. 회부일자 : 2019. 8. 13.

II. 제안이유

-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취약 학생들의 교육소외 해소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III. 주요내용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종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사업전담인력의 배치 및 역할, 보수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

3. 기 타

입법예고(2019. 8. 19.~ 8. 26):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9년 8월 1일 장인홍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798호로 발의되어 2019년 8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상위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¹⁾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지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문화·복지 수준 제고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 이러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그리고 「2019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 계획」에 따라 저소득층 영유아와 초·중·고 학생의 교육적, 문화적 결손을 예방·치유하여 대상 유아 및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²⁾

1)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계층 간 교육격차,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정책을 수립하였고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 사업(2012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이 2003년부터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었음.

2) 2003년부터 초기에는 행정동 중심의 지역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점차 빈곤층 밀집학교가 소재한 지역으로 확대되었음. 또한 사업 초기부터 지난 2010년까지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다가, 2011년부터는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여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 학교와 지역이 확대되었음(동 사업의 연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1] 참고).

[표1] 2019년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단위: 천원)

세세부사업	사업 항목	항목별 예산액	세세부사업별 예산액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지원	교육복지학교사업비	26,432,120	31,107,826
	두런두런프로그램운영	414,066	
	서울희망교실 운영	4,261,640	
교육복지지원활성화	교육복지조정자채용	1,236,849	1,779,315
	교육복지우선지원성과관리 외 10개 사업	542,466	

- 그러나 현행 법령은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사항, 사업전담인력의 배치와 역할, 자격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조례안이 상위법령의 미비점을 보충하고 보다 체계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 그리고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 동 조례안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책무의(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총칙 규정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전담인력의 배치, 역할, 보수와 자격, 사업전담부서의 설치·운영, 그리고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과 지역기반 교육복지 협력사업 등(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본칙 규정의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 조문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5조(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사업의 비전, 추진

목표와 방향, 추진과제, 전년도 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와 개선사항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³⁾

이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체의 대외적 신뢰성을 고취시키고,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안 제6조(사업의 종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교육과정이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건강한 심리 정서 안정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의⁴⁾ 지원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사업 수혜자의 교육적 수요에 보다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음으로 안 제9조(사업전담인력의 배치 및 역할)와 제10조(사업전담인력의 보수 및 자격)는 사업전담인력의 배치와 역할, 보수와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3조의⁵⁾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3) 현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별도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4)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5) 제12조(사업전담인력의 배치·활용) ① 사업학교와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은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사업학교에 배치된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2. 사업대상학생을 위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관한 교육
3. 사업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활용
4. 사업과 관련한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지원 등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6)

[표2] 사업전담인력 현황(2019.4.22. 기준)

전담인력		인원
교육복지조정자	본청	1명
	교육지원청	22명
지역사회전문가	초·중 거점학교(293교)	293명
유아교육복지전문가	거점유치원(11원)	11명
계		327명

○ 다음으로 안 제12조(실태조사 및 연구지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효율적인 사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제12조제3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동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제6조에7) 따라 위탁운영 되고 있

③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학교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교육지원청 및 시·도 교육청의 사업계획에 반영
2. 사업이 필요한 학교의 발굴과 지원
3. 지역사회 교육복지 자원의 발굴과 활용
4. 사업학교 간 연계·협력 지원 등

제13조(사업전담인력의 보수 및 자격) ① 사업전담인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공무원 보수 규정」【별표 3】의 7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경력기간을 추가하거나 교육지원청 및 학교별 경력기준 차이 등 세부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1. 교육, 문화, 복지 등 활동경험이 있는 자
2.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자
3. 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
4.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6) 전담인력의 신분과 자격요건, 급여와 복리후생 등은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2] 참고.

7) 제6조(지역교육복지센터)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자치구 단위로 지역교육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당지역 내의 교육복지 자원 조사 및 개발
2. 지역사회 내 교육복지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3.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역기관 간 공동사례 관리

는 지역교육복지센터의 경우8) 교육수요자의 관점에서 위탁운영의 효과성, 지속성 등에 대해 보다 폭넓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 제12조가 교육복지지원사업의 개선·발전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 밖에 동 조례안은 조문별 구성 체계와 상위법령과의 입법체계 등에 있어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019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행정안전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1282, 2019.8.21).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지역주민을 활용한 자원봉사자 양성

5. 그 밖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복지 지원사업

③ 교육감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자치구에게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센터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각 센터에는 학교, 자치구, 교육지원청에서 추천받은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복지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8)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연혁 및 운영 현황은 [붙임3] 참고.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61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중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이하 "학습부진아등"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 ②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⑤ 삭제 <2017. 5. 8.>
- ⑥ 삭제 <2017. 5. 8.>
- ⑦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 연수의 종류
 4.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5. 연수의 이수기준
 6.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 ⑧ 제7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학습부진아등의 판별·진단·지도·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 12. 31.] [교육부훈령 제106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3조(사업대상학생) ① 사업대상학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7.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②사업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 학생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사전검사 등 필요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사업학교의 지정 및 지원) ① 사업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별표1]의 보통교부금 기준 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시·도교육감이 정하되,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사업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바에 따라 당해 학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교육감은 지정된 사업학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조직,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시·도교육감이 사업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금액을 참고하되, 지역의 여건과 사업학교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학교장의 책무) ① 사업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교육격차 완화, 학업성취도 제고, 교육기회 균등 제공, 교육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기획·운영을 주관하는 교육복지 전담부서의 지정 또는 구성
2.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계획 수립·시행
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
4.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교내 교육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②사업학교의 장은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업학교에 지원되는 방과후 학교 사업 등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 인력, 예산 등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청의 교육 복지우선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이하 "중앙연구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연구지원센터는 교육복지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정책연구 및 정책자문, 사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연수, 기타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 중앙연구지원센터에 국고 및 분담금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도 교육복지센터 등) ① 시·도교육감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학교 지정, 교직원 연수, 사업평가, 사업운영 등에 관한 지원을 수행하는 시·도 교육복지센터 등 필요한 기구나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 교육복지센터 등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지역교육복지센터) ① 교육지원청은 사업학교의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학교에 속하지 않은 사업대상 학생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지원청은 사업을 지원하거나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조직, 인력,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교육지원청은 사업을 지원하거나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교육복지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제12조(사업전담인력의 배치·활용) ① 사업학교와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은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사업학교에 배치된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2. 사업대상학생을 위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관한 교육
3. 사업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활용
4. 사업과 관련한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지원 등

③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학교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교육지원청 및 시·도 교육청의 사업계획에 반영
2. 사업이 필요한 학교의 발굴과 지원
3. 지역사회 교육복지 자원의 발굴과 활용
4. 사업학교 간 연계·협력 지원 등

제13조(사업전담인력의 보수 및 자격) ① 사업전담인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공무원 보수 규정」【별표3】의 7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경력기간을 추가하거나 교육지원청 및 학교별 경력기준 차이 등 세부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1. 교육, 문화, 복지 등 활동경험이 있는 자
2.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자
3. 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
4.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붙임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연혁

- 2003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총 34교 시행
 - 서울 6개 지역_강서구2, 노원구2, 강북구1, 관악구1
 - 유아 교육복지사업, 지역청 단위 지역기관 공동사업 추진
 - ※ **교육부 시범사업으로 저소득가정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ZONE 단위 지원)**

- 2006년
 -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68교) 시행

- 2009년
 - 교육복지우선지구(교복투학교+자원학교) 시행
 - 교복투학교는 14개 자치구 확대(총 105교), 지역기반형 협력사업 확대

- 2011년
 - 서울 25개 자치구로 사업 확대 사업법령제정 자원학교를 교육복지학교로 통합
 -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으로 전환 총 819교(특별지원학교+일반지원학교) 운영
 - 교육복지 유아사업 저소득가정 집중지원 강화(58개원)
 - ※ **교육부에서 지방사업으로 전환 저소득가정 학생이 많은 학교 중심으로 사업 추진(학교 단위 지원)**

- 2012년
 -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으로 전환 총 819교 운영
 - 교육복지 유치원 146개원으로 확대 공립유치원으로 거점 재지정 인력 배치
 - 지역교육복지센터 5개소 시범사업(위탁운영)

- 2013년
 -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353교, 일반지원학교 해지
 - 지역교육복지센터 16개소 구축(위탁운영)
 - 유아 교육복지 특화프로그램 '두런두런' 개발·운영

- 2014년
 -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353교
 - 유아 교육복지 특화프로그램 '두런두런' 확대
 - ※ **교육부 추진 방향: 저소득가정 학생 한 명이 있어도 지원(학생 단위 지원)**

□ 2015년

-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828교로 확대('14년 27% → '15년 64% 초 419교, 중 348교, 고 61교)
⇒ 국민기초 및 법정한부모가족 학생 10명 이상 초·중학교
- ※ 학생의 교육복지 지원을 학교의 기본책무로 변환하며 사업학교 확대
- 초·중 저소득가정 학생 지원 확대('14년 41% → '15년 95%)
- 고등학교 교육복지 특화프로그램 '고교희망교실' 개발·운영

□ 2016년

-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934교로 확대(초 460교, 중 351교, 고 123교)
- 법정저소득(법정차상위포함)가정 학생 10명 이상 학교로 확대
- 초·중 저소득가정 학생 지원 확대('15년 95% → '16년 96%)
- 지역교육복지센터 21개소로 확대 운영
- 지역교육복지공동체 전면 시행(11개 교육지원청 총 182개 구성)
- ※ 학교 내 교육취약 및 위기학생 지원「교육복지통합지원시스템」활성화 및 학교 밖 취약 학생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지역교육복지공동체」실현

□ 2017년

-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951교로 확대(초 509교, 중 359교, 고 83교)
- 저소득(중위소득52%) 가정 학생 10명 이상 학교로 확대
- 일반학교(초·중·고) 예산 선택제를 통한 학교의 자율성 확대
- 교육복지 특화 '희망교실'을 거점·비사업 초·중까지 확대(명칭 변경, 총 389교 3,158팀)
- 지역교육복지센터 23개소로 확대 운영
- 지역교육복지공동체 192개 운영으로 학교-지역간 거버넌스 강화

□ 2018년

-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926교로 운영(초 507교, 중 359교, 고 60교)
- 교육복지 특화 '서울희망교실'을 전체 초·중·고로 확대(명칭 변경, 총 617교 6,267팀)
- ※「서울희망교실」의 대상 확대 및 유연화로 교육복지 추진 방식 다양화
- 지역교육복지센터 24개소로 확대 운영
- 지역교육복지공동체 176개 운영 및 공동체별 40~60만원 운영비 지원

□ 2019년

-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952교로 운영(초 509교, 중 365교, 고 78교)
- 저소득가정(중위소득 52%) 학생(초·중 10명→8명, 고 150명→120명) 기준 조정으로 일반학교 확대
- 교육복지우선지원 거점 해지학교 안정화 예산 지원

- 교육복지 특화 '서울희망교실' 공모-지원-관리의 교육지원청별 시행(718교, 6,000팀)
- 지역교육복지센터 25개소로 확대 운영(종로교육복지센터 개소 예정)
- 지역교육복지공동체 안정화를 위한 운영비 증액 지원으로 활성화

[붙임 2]

사업전담인력의 신분과 자격요건 등

1. 전담인력 신분과 자격요건

- 신분 : 무기계약직
- 자격 요건

직종분야	자 격 조 건
교육복지 조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① ~ ② 중 한 개만 충족하면 됨 ① 4년 이상의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대상 활동 경험이 있으며, 2년 이상의 지역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자(세부 활동경력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경력증명서 담당업무에 관련업무 지역 네트워크 사업 활동경력 등 명시) ②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에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활동 경력 4년 이상인 자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평생교육사 2급 이상, 교사 자격증 중 한 가지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활동 경험이 있으며, 1년 이상의 지역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자 (세부 활동경력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경력증명서 담당업무에 관련 업무 지역 네트워크 사업 활동경력 등 명시)
유아교육 복지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정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중 한 가지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분야에서 유아대상 활동 경험이 있는 자(세부 활동경력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경력증명서 담당업무에 관련 업무 명시)

<p>※ 경력 인정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 문화, 복지 등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 청소년 시설 및 청소년 단체(청소년기본법) - 평생교육시설·법인·단체(평생교육법)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12조),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비영리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정부기관, 공공기관, 법인기관 및 민간기관 등 (사회복지사·청소년지도사·청소년 상담사·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2) 지역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증명서에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력을 명시한 경우에 한함

2. 전담인력 2019 급여와 복리후생, 근무방식(형태)

- 임금(기본급)
 - 교육복지조정자 : 월 2,516,610원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유아교육복지전문가 : 월 2,016,070원
- 수당 및 처우개선 수당
 - 수당 적용 기준일 : 학급 학교는 3. 1. / 행정기관은 1. 1.

- 지급 대상 : 적용기준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적용 기준	수 명 당 칭	지급액	지 급 기준일	지급기준	계 산 방 법		임금성격
					신분변동 (휴직·퇴직·사망)	무급 병가	
공통 기준 (공통 수당)	교 통 보조비	• 월 6만원	매월	• 공통기준 적용	일할 계산	일할 계산	통상/평균
	근 속 수 당	• 월 32,500원~650,000원 (근속년수 1년 이상자)	매월	• 공통기준 적용	일할 계산	일할 계산	통상/평균
	가 족 수 당	• 배우자: 월 4만원 • 자녀 -첫째 월 2만원 -둘째 월 6만원 -셋째 이하 월 10만원 • 그 외 부양가족 월 2만원	매월	• 공통기준 적용 • 부양가족이 있으며, 지급기준일(매월 보수지급일) 현재 재직	재직자 지급	전액 지급	임금제외 (복리비)
	자녀학비 보조수당	• 연 1,873,200원 한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분기별	• 공통기준 적용 • 고등학교 입학중인 자녀가 있는 자	월할계산	전액 지급	임금제외 (복리비)
	명절 휴가비	• 연 100만원 (추석 50만원, 설 50만원)	연2회 (설추석)	• 공통기준 적용 • 지급기준일(설/추석) 현재 재직	재직자 지급	전액 지급	평균
	정 기 상여금	• 연 90만원	연2회	• 공통기준 적용 • 지급기준일(1월, 8월 보수지급일), 현재 재직	재직자 지급	전액 지급	평균
공통 기준외	직 무 수 당	• 월 2만원	매월	• 공통기준 외 적용	일할 계산	일할 계산	통상/평균
별도 기준	급식비	• 월 13만원	매월	• 별도기준 적용 (주 20시간 이상, 15일 이상인 근로자)	매월 지급기준 충족 시 전액 지급		임금제외 (복리비)

※ 「2018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업무지침」에 의거하며, 추후 임금 협약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시간외(연장·휴일) 근로 수당

- [월 통상임금 ÷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1.5배

○ 근무방식(형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붙임 3]

지역교육복지센터 연혁 및 운영 현황

1. 연혁

- [교과부 특교사업] 지역교육복지센터 5개 지역 시범 운영(2012. 3월 ~ 2013. 2월)
구로, 노원, 강서, 관악, 성북
- 교육지원청 공모를 통한 지역교육복지센터 선정 및 운영(2013. 3월 ~)
- 지역교육복지센터 확대
 - 2013. 3월 ~ 2015. 12월: 11개소
(동대문, 종랑, 은평, 금천, 영등포, 도봉, 중구, 강동, 양천, 성동, 강북)
 - 2016. 3월: 2개소(송파, 광진), 2016. 11월: 2개소(서대문, 동작)
 - 2017. 3월: 1개소(용산), 2017. 9월: 2개소(마포, 강남)
 - 2018. 3월: 1개소(서초) [총 24개소]
- 교육지원청 위탁 운영자 공모(재위탁)를 통해 24개 센터 위탁 계약 체결(2019. 3월 ~ 2021. 12월)

2. 운영 현황

(단위: 천원)

교육 지원청	센터명	직영 /위탁	운영기관	직원 현황	대표자	위탁계약일	위탁비(2019.3.~12. 10개월분)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계
01 동부	동대문	위탁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4	황춘광	2019. 3. 1.	18,190	121,275	33,785	173,250
	종랑	위탁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5	최수진	2019. 3. 1.	19,250	144,375	28,875	192,500
02 서부	은평	위탁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5	전용재	2019. 3. 1.	17,328	144,375	30,797	192,500
	서대문	위탁	사단법인 탁틴내일	4	최영희	2019. 3. 1.	19,057	121,275	32,918	173,250
	마포	위탁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	4	황인국	2019. 3. 1.	19,057	121,275	32,918	173,250
03 남부	구로	위탁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	4	민경설	2019. 3. 1.	18,650	121,275	33,325	173,250
	금천	위탁	비영리민간단체 산아래문화학교	4	김유선	2019. 3. 1.	21,775	121,275	30,200	173,250
	영등포	위탁	사회복지법인 사랑의힘	4	김연경	2019. 3. 1.	22,375	121,275	29,600	173,250

교 육 지원청	센터명	직영 /위탁	운영기관	직원 현황	대표자	위탁계약일	위탁비(2019.3.~12. 10개월분)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계
04 북부	노원	위탁	사단법인 청소년과나란히	5	부은희	2019. 3. 1.	17,671	144,375	30,454	192,500
	도봉	위탁	사단법인 청소년교육전략21	4	김영성	2019. 3. 1.	19,018	121,272	32,960	173,250
05 중부	용산	위탁	사회적협동조합 커리어코칭	4	고지영	2019. 3. 1.	19,055	121,275	32,920	173,250
	중구	위탁	비영리민간단체 서울흥사단	4	조현주	2019. 3. 1.	19,057	121,275	32,918	173,250
06 강동송 파	강동	위탁	사단법인 위례	4	임근황	2019. 3. 1.	17,325	121,275	34,650	173,250
	송파	위탁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	4	양동훈	2019. 3. 1.	15,535	121,272	36,443	173,250
07 강서양 천	강서	위탁	비영리민간단체 서울흥사단	5	조현주	2019. 3. 1.	19,250	144,375	28,875	192,500
	양천	위탁	사회복지법인 살레시오수녀회	4	최주영	2019. 3. 1.	19,057	121,275	32,918	173,250
08 강남서 초	강남	위탁	사단법인 인터넷꿈희망터	4	김은호	2019. 3. 1.	19,057	121,275	32,918	173,250
	서초	위탁	재단법인 푸른나무 청예단	4	문용린	2019. 3. 1.	19,055	121,191	33,004	173,250
09 동작관 악	동작	위탁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4	박옥식	2019. 3. 1.	19,057	121,274	32,919	173,250
	관악	위탁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	4	김현수	2019. 3. 1.	15,940	121,275	36,035	173,250
10 성동광 진	성동	위탁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	4	정순택	2019. 3. 1.	18,804	111,838	42,608	173,250
	광진	위탁	학 교 법 인 대 한 예 수 교 장 로 회 충신대학교	4	이승현	2019. 3. 1.	19,057	121,275	32,918	173,250
11 성북강 북	성북	위탁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4	이성희	2019. 3. 1.	19,055	121,275	32,920	173,250
	강북	위탁	강북교육지원센터 도깨비	4	허정숙	2019. 3. 1.	19,057	121,275	32,918	173,250
합 계							450,732	2,993,472	790,796	4,235,000